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039
----------	------------

제안년월일 : 2025년 9월 12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금회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이 확정되면 가정용의 현행 3단계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현행 30톤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인상 첫해인 2026년에는 가정용 전체 연평균인상율 13.43%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20%의 인상율이 나타나 부담이 우려되므로,
- 가구 구성원 수가 많은 가정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18세 이하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의 하수도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고,
- 징수 온라인시스템 개편을 위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1월과 2월 사용에 대한 3월 납기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함.

2. 주요내용

- 가. 18세 이하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의 하수도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함.(안 제34조제1항제9호, 안 제34조제1항제10호 삭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4조제1항제9호 중 “세 명”을 “두 명”으로 한다.

안 제34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9호의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4조(감면) ① (생략)	제34조(감면) ① (현행과 같음)	제34조(감면) ① (개정안과 같음)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개정안과 같음)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의 경우 : 사용량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경감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 ----- -----	7. (개정안과 같음)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부지경계선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면제 시행일인 2009년 10월 1일 부지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 면제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 ----- ----- ----- ----- ----- ----- ----- ----- -----	8. (개정안과 같음)

9.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
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10. 18세 이하 미성
년 자녀가 두 명이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
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

11. - 12. (생 략)

13. 「장애인복지
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의 경우 : 10세제곱
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14.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
령 제14조의2에 따
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
하거나, 분류식하
수관로 중 우수관로

9. -----
-----세 명 -

----- 경우 : ---

10. -----

----- 경우 : -

11. - 12. (현행과 같
음)

13. -----

----- 경우: -----

14. ----- 「지
하수법 시행령」 제
14조의2-----

9. -----
-----두 명 -

----- 경우 : ---

(삭 제)

11. - 12. (개정안과
같음)

13. (개정안과 같음)

14. (개정안과 같음)

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경우 : 사
용료의 100분의 50
에 대하여 감면

15.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설>

--- 경우: -----

1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
음)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15. (개정안과 같음)
② ~ ⑤ (개정안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
는 2026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사용료 감
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3
월 납기분부터 적용
한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가목,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의 수행

라.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의 수행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6조”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6조”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영“ 이라 한다.)”를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4항 후단 중 “납부토록”을 “납부하도록”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33조의2 단서 중 “「지방재정법」 제82조”를 “「지방재정법」 제82조”로 한다.

제34조제1항제7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을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세 명”을 “두 명”으로,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로, “경우 :”를 “경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9호의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 (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구분 업종	사용구분(㎥)	연도별 단가(원/㎥)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부터
가정용	㎥당	480	560	630	700	770
욕탕용	500이하	520	590	660	730	800
	500초과~2,000이하	630	710	790	870	950
	2,000초과	720	810	890	970	1,050
일반용	30이하	580	660	740	820	900
	30초과~100이하	1,550	1,690	1,830	1,970	2,100
	100초과~1,000이하	2,100	2,200	2,300	2,400	2,500
	1000초과	2,200	2,300	2,400	2,500	2,600
유출지하수	㎥당	480	560	630	700	770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종	구분내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가정용 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욕탕용 업종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일반용 업종

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생략)

라. 「관광진흥법」, 「온천
법」 및 「자연공원법」 등
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의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생략)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배분은 다
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2. (생략)

② (생략)

제23조(사용료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이외에 하수도사용요

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
단지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현행과 같음)

라. 「관광진흥법」, 「온천
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관광지·관광단
지의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현행과 같음)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
----- 한
다) -----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용료 등)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

금의 산정 및 세대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략)

제2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② (생략)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 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 분을 해당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점용허가시에 당해년도 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⑤ (생략)

제2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 6. (생략)

② (생략)

제3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생략)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6조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해당 연
도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

1. -----
----- "령"이라 한다) -----

-.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계획 승인 시 그 개산액을 통보 하되, 제29조의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준용하여 징수(납부)한다. 다만 제29조를 준용하지 아니할 경우 개산액을 준공 전 분할 납부토록 하되 준공 시에 정산 징수(납부)한다.

제3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 1.·2. (생략)
3.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각 구청장이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의 구청장에 대하여는 분뇨처리수수료를 면제하고 다른 구(강남구는 제외한다.)의 구청장에 대하여는 가산금 10%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생략)
- ② (생략)

----- 납부하도록 -----

제3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

- 1.·2. (현행과 같음)
3. -----

----- 제외한다) -----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9년 10월 1일 부지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0미터 이
내 거주 가구인 경우 : 면제

9.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
에 대하여 감면

10.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
에 대하여 감면

11. · 12. (생략)

1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 10세제곱미터 이내 사
용량에 대하여 면제

14. 유출지하수를 「지하수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
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
도로 배출하거나, 분류식하수
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
천으로 배출하는 경우 : 사용
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
면

15. (생략)

② ~ ⑤ (생략)

9. -----두
명 -----
경우 : -----

(삭제)

11. · 12. (현행과 같음)

13. -----
----- 경우:

14. ----- 「지하수법 시행
령」 제14조의2-----

----- 경우: -

--

1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2>

하수도 사용료 요금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금표(1개월 기준)

구 분	2022년부터	
	사용구분(㎡)	단가(원/㎡)
가정용	300이하	400
	30초과~50이하	930
	50초과	1,420
목탕용	500이하	440
	500초과~2,000이하	550
	2,000초과	630
일반용	300이하	500
	30초과~50이하	1,000
	50초과~100이하	1,520
	100초과~200이하	1,830
	200초과~1,000이하	1,920
	1,000초과	2,030
유출지하수	㎡당	400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

<신 설>

【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금 및 업종구분 (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금표(1개월 기준)

구분	사용구분(㎡)	연도별 단가(원/㎡)				
		2026 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부터
가정용	㎡당	480	560	630	700	770
	500이하	520	590	660	730	800
	500초과~2,000이하	630	710	790	870	950
목탕용	2,000초과	720	810	890	970	1,050
	300이하	580	660	740	820	900
	30초과~100이하	1,550	1,690	1,830	1,970	2,100
일반용	100초과~1,000이하	2,100	2,200	2,300	2,400	2,500
	1000초과	2,200	2,300	2,400	2,500	2,600
	유출지 하수	㎡당	480	560	630	700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